

송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3. 3. 1. 제정
2011. 3. 1. 1차 개정
2014. 3. 1. 2차 개정
2015. 11. 1. 3차 개정
2016. 11. 1. 4차 개정
2017. 11. 1. 5차 개정
2018. 7. 1. 6차 개정
2019. 11. 1. 7차 개정
2021. 7. 12. 8차 개정
2023. 12. 21. 9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송우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규정]

구분	권한 · 권리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 학생은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존중·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과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녀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고,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학칙으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p>학교의 장 및 교원의 권한과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권한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히고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	--	--

제6조(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 2장 학생생활지도

제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
 -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수업 중 엮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 교원에 대한 모욕행위
 -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학습을 위한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등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도박 물품
 -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휴대용 게임기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식습관 등 급식지도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사이버 중독·감염병 예방 등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통학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
 -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 금지
 -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 가출, 기타 아동·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등

제9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친절, 봉사
 - 협동, 근면, 성실
 - 인사하기, 공손하게 대하기 등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
 -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등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제10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특정 종교·인종·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등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등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1조(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조언의 상황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진학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 면담 또는 관찰 시 교우관계·학습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한 경우
 -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학생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정 환경 및 취업 등에 대하여 교원에게 정보 제공, 해결 방안 제시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반복적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제12조(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8. 그 밖의 상담 거부 가능 사안
 -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제13조(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사전 허락 없이 녹음기, 전자기기, 화장품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봉사 시간(청소 시간 등)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지나친 장난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교실, 급식실, 특별실 등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 모욕적인 말 등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등

제14조(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지시

- 지시는 학생의 긍정적 내용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 과제를 부여하는 지시를 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완료 이후 그에 따른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시의 요건]

학생의 학업과 진로의 성장 및 발전, 안전한 학교생활 등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시 상황>

-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지나친 잡담·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늦어 일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 등·하교 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말대꾸, 비아냥 등 중지 지시
-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등

나. 제지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지의 상황 >

- 복도 및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 공구(실습실), 화학약품(과학실 등),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을 갖고 있거나 흡입하는 경우
-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 도박에 관련된 물건
-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다. 분리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송우초등학교 학생 분리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연,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뒤(최대 20분) (교실 외 장소에서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뒤쪽으로 이동하여 서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시 (최대 2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기존 수업에 계속 참여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을 벌이거나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행한 경우(신체 접촉, 폭언 및 욕설 등)	학생지도실 (분리 시점이 수업 시작 후 20분 경과 이전일 경우 해당 수업 시간 종료 시까지 / 분리 시점이 수업 시작 후 20분 경과 이후일 경우 다음 수업 시간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학생지도실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	학년 별 과제 부여
3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점심 시간 혹은 하교 시간이 임박한 시점에 2호 지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지도실 (점심시간일 경우 점심시간 이내 / 하교 후일 경우 하교 시간 후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단, 점심시간 이내 지도시간이 20분 이내일 경우 5교시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	학년 별 과제 부여
비고	<p>㉠ 2·3호 지도의 경우 1순위 '교감', 2순위 '교장' 순서로 인계 및 교육하며, 부재 등의 사유로 인계 및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3순위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전담교사', 4순위 '해당 시간이 전담 시간인 담임교사', 5순위 '상담교사'(상담 일정이 없는 경우), 6순위 '교무실무사'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p> <p>㉡ 분리 시점은 교실에서 분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 분리 대상 학생이 학생지도실로 이동을 거부하는 등 인계 및 교육이 시작되는 시간을 늦출 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지도할 수 있다.</p> <p>㉣ 분리 대상 학생이 학생지도실에서의 학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 해당 규정은 학급 교실 외 전담 교실과 특별실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한다.</p>			

라.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담배,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학교폭력, 비행(도박, 오토바이, 절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등에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송우초등학교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호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 사용 시: 주위와 함께 해당 물품을 분리 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2회 사용 시: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해당 물품 분리보관 · 분리 물품은 하교 시 돌려줌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영구	교무실	해당 물품 확인 즉시 담당 교사가 물품 분리 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이동하여 보관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호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비고	㉠ 물품 분리의 모든 경우에서 학생으로부터 물품 분리 후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2·3·4호) ㉢ 2·3·4호의 경우 분리보관 당일 담당 교사는 분리보관 물품과 사유를 학부모에게 알린다. ㉣ 2·3·4호의 경우 분리보관 후 학부모에게 반환받을 의사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3일 이내 회수(3일이 경과하는 경우 폐기) ·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즉시 폐기			

제15조(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보상)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보상의 상황>

-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학생
- 교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교직원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 학생
-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생
-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등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 노력을 기울여 이전에 부족한 점을 개선했거나 발전한 학생 등

제 3절 기타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쉬운 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단서로 제공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확대 문자, 수어, 자막 등을 활용
 - 수업 참여를 목적으로 음성-자막 변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활용 허용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라.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고시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 4절 그 외의 생활지도

제22조(안전지도)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봉사단체 및 학부모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생활 교육한다.

제25조(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3장 학생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2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학교소개-학생생활인권규정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된 경우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6. 제14조(훈육) 나. 제지에 따른다.

제33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1.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제14조(훈육) 라. 물품보관 및 분리 보관에 따른다.

제34조(물건의 수거)

1.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2.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4조(훈육) 라. 물품보관 및 분리 보관에 따른다.

제3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6조(교우관계)

학교 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7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5. 신발은 실내화와 실외화로 구분하여 신는다.

제39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0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여 취미와 적성을 기를 수 있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4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금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지킨다.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4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4조(참정권 보장)

1.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3.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통신

제4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46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1.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4.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5.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6조(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다.

제 4장 장애인권

제1절 총칙

제47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8조(책무)

1.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장애학생의 권리

제4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나.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 마.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50조(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1.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나.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다.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라.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마.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52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장 학생자치활동

제53조(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자치회, 전교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전교학생자치회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학생 동아리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목적)

학생자치회 임원을 자치적으로 선출하고 스스로 학교생활을 해나가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학생 자치활동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자치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6조(교사의 임무)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지도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무 등을 사전에 교육한다.

제 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칙

제57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적용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9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생활교육은 교육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구성 및 운영

제60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생활교육 심의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 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 나.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다.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호, 안전 확보, 교내·외에서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3.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62조(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가.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원: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
 - 라.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63조(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학생이 포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5조(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6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67조(징계의 종류)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 이수
 -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8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할 수 있다.
 -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라.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예-학교환경 미화작업,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2. 사회봉사

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간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라. 사회봉사의 예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가.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라.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5. 생활교육처분

가. 생활교육 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사회봉사 이상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생활인권부에서 기안, 결재한다.

제69조(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 또는 사행성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학생	○	○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5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7	학교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학생	○	○	○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0	휴가를 휴대한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2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3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14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1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6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17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8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1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70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재심의 신청)

1.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3. 학교 내 재심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제72조(재심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절차>

1. (이의제기 단계)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함.
2. (재심의 여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심의함.
3. (재심의 결정)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함.
4. (재심의)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함. 이때,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수 없음.

5.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통보, 선보 시행의 절차를 따르게 됨.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73조(사안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4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최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회의록을 작성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지

제75조(생활교육 내용의 통지)

1.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기간, 징계기간 등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학교의 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주의해야 한다.

제76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7조(결과 처리·열람)

1.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제·개정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78조(구성)

1.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교원 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 전문가 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생 수가 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 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중에 위촉하여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79조(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및 제·개정 사유 발생 시 소집한다.

제82조(제정 및 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관한 절차를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제83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장은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된 후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84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